

제260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3. 3. 14.

의회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27
----------	------

2023. 3. 14.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. 2. 27.
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8.

다. 상정일자 : 2023. 3. 9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장길천 의원

나. 제출사유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명시화된 민원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·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·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민원 접수 및 관리 (안 제3조)
- 민원처리의 예외 및 민원처리 (안 제4조, 제5조)

-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지 (안 제6조, 제7조)
- 민원문서 반환 및 민원내용 활용 (안 제8조,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
 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 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 - 기 타
- 1) 입법예고(2023. 3.4. ~ 3. 8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- 의안번호 제2027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」은 2023년 2월 27일 장길천 의원이 제안하여 2023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명시화된 민원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·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“민원”, “민원인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.

- **안 제3조**에서는 민원 접수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의회홈페이지에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개설·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고,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.
 1.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
 2.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
 3.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안내
- **안 제4조**에서는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민원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.
- **안 제5조와 제6조**에서는, 민원처리에 관한 방법과 처리 기간 “1. 설명, 질의 등의 민원: 7일, 2. 건의, 진정, 탄원, 호소 등의 민원: 14일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의장은 민원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광진구청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,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할 수 있음을 명시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관계법령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마련된 안건임.
- 그동안 의회 규정(예규)으로 운영돼오던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자치법규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의원 별로 비체계적으로 관리하던 민원처리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통해 의회의 신뢰도 상승과 구민의 권익 보호·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또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청탁 등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신속·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